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6월 19일, 김용태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6년 7월 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 8. 26.) 상정, 제안설
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 9. 8.) 상정, 축조심
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 9. 17.) 상정, 소위심
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용태 의원)

현행법은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수업운영 방법의 개발·보급, 농어촌학교 학생의 적성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지역의 학생들은 도시지역의 학생들에 비해 방과 후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활동이 제한적이고 이를 위한 시설·공간도 부족하여 학교 수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학습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나, 현행법은 정규 교육과정인 농어촌지역의 학교에 집중 지원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학교 밖 학습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학생들에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 공간과 다양한 교육·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설치하도록 지원하며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운영비 지원은 한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어려움이 예상됨. 이에 농어촌학교 학생의 방과 후 교육활동과 그 활동에 필요한 시설·공간의 활용 및 인력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제4호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이정은 수석전문위원)

현행 법 체계 내에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방과 후 활동을 지

원하기 위한 시책 마련 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관련 시책이 수립·시행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은 입법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농어촌지역의 방과 후 활동에 대해 특별히 별도로 명시함으로써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의지를 표명하고 관련 시책 마련을 촉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별도 입법에 대한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준병)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